

담당	책임자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아래와 같이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뒷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조항 중 달리 작성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고객)와 수탁자(은행)가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사항

신탁계약일	계약명	계좌번호
구분		내용
제2조	신탁금액	
제3조	신탁기간	(신탁기간 만료시 재산교부 가능일 :)
제8조	투자자문업자의 지정	
제16조	신탁기본보수	신탁원본평균잔액 x 연 ()% x 신탁기간(일수) / 365
제17조	신탁수익보수	④ 기준지표 : () ⑥ 수익보수 가액 1. 신탁수익률이 기준지표수익률보다 크고, 연 ()%의 신탁수익률보다 큰 경우 수익보수 = 신탁원본 x (신탁수익률 - 기준지표수익률) x ()% 2. 신탁수익률이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연 ()%의 신탁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3. 신탁수익에서 수익보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신탁수익률(이하 본 호에서는 “순수익률”이라 함)이 연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수익률이 연 ()%를 초과하도록 수익보수 가액을 계산한다.
제18조	이익의 계산 및 지급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5. 기타 ()
제20조	중도해지	신탁계약일로부터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 신탁계약일로부터 ()이상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
제27조	통보, 확인방법	① 통보, 확인방법 :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전화 ② 통 보 방 법 : <input type="checkbox"/> 자택우편, <input type="checkbox"/> 직장우편,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E-mail), <input type="checkbox"/> 통보생략(불원)
제28조	특약	
[별표2]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서	신탁자금 운용방법 (별표1) (운용대상의 종류)	세부내용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운용대상
		위험도
	운용비중	
위탁자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대리인	성명 : 인(서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주소 :	
수탁자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장 또는 계약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위탁자의 위 신청에 동의하는 것으로 같습니다.	

■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문자통보안내) 신청

특정금전신탁 알리미서비스	<input type="checkbox"/> 아래의 알리미사항에 대하여 문자통보 안내를 신청합니다. - 신탁만기도래, 운용자산 만기도래, 추가입금액, 기타 주요 통지사항 등	고객명 : 인(서명) 대리인 : 인(서명)
---------------	---	----------------------------



자문형 특정금전신탁 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이익중식 및 신탁재산 관리를 목적으로 금전을 신탁한다.

제2조 (신탁금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금액은 금 _____ 원으로 한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부터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까지로 한다. (신탁기간 만료 시 재산교부 가능일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② 이 신탁계약의 신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기간 만료일 최소 20일 전까지 신탁기간 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 시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탁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신탁기간이 연장된다.

⑤ 운용방법의 변경 없이 신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 신탁계약은 연장된 신탁기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4조 (수익자)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한다.

제5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위탁자는 별표1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중에서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별표2]의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에 기재하여 운용하도록 지시하며, 수탁자는 이 지시에 따라 신탁재산인 금전을 운용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대로 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4-85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의 고유계정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대여 또는 자금중립회사의 중개를 거쳐 행하는 단기자금 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도 위탁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운용방법 내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전략의 수립
 2.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의 구성
 3.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종목의 결정
 4. 투자대상 자산의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의 결정
 5. 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부수업무
- ④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의 운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운용능력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제8조에서 위탁자가 지칭하는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문을 받는 경우에도 수탁자의 최종적인 투자판단 과정을 거쳐 신탁재산을 운용하므로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자문 내용은 다르게 운용될 수 있다.
- ⑥ 주식에 운용할 경우 등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탁자가 직접 행사한다.
- ⑦ 수탁자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 ⑧ 위탁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탁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재무상태 등의 확인)

① 위탁자는 위탁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소득수준, 금융자산의 비중 등 신탁재산 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이하 "재무상태 등"이라 함)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 체결 시
 2. 매분기 1회 이상
 3. 수탁자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4.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무상태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자의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사항을 신탁재산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변경여부의 확인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재무상태 등의 변경여부 확인은 대면, 전파, 서면, 전자우편(e-mail) 등 위탁자와 수탁자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 위탁자가 재무상태 등을 수탁자에게 정확히 제공하지 않거나, 수탁자의 변경여부 확인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탁자에게 적법한 방식으로 신탁재산이 운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 (대입의 지장)

① 위탁자는 제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 운용방법에 대하여 대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일체의 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대입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제7항의 대입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 (투자자문회사의 지정)

①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제5조 제5항에 따라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다.

1. 투자자문회사명 (자필기재 _____)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투자자문회사 중 1개의 투자자문회사를 새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투자자문회사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와 수탁자 사이의 투자자문계약이 해지된 경우
 3. 위탁자가 지정한 투자자문회사의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인하여 투자자문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 (투자자문수수료)

수탁자는 투자자문회사에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운용내역 통보 등)

① 수탁자는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다음 말 말일까지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제11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재산의 평가가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 등으로 위탁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신탁재산 명세서
2.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신탁재산 운용내역서

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제1항에 따른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교부가 불가능하다는 뜻과 그 사유가 기재된 서면 등을 위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제공받은 자가 그 정보를 거래 또는 업무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것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경우
2.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등이 포함된 장부·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신탁계약이 해지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의 열람제청 요청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법적절차)

신탁재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차감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계약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4조 (수익의 귀속 등)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 및 손실은 전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제15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한다.

제16조 (신탁기본보수)

① 신탁기본보수(이하 "기본보수"라 함)는 다음의 산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text{기본보수} = \text{신탁원본평균잔액} \times \text{연} (\quad) \% \times \text{신탁기간(일수)} / 365$$

이 경우, 신탁원본평균잔액이라 함은 일반 신탁원본을 신탁기간(일수)동안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신탁기간(일수)으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② 본 조에서 신탁기간(일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기본보수 차감일부터 제3항에서 정한 기본보수 귀속일 또는 청구일 전일까지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기본보수를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신탁수익보수)

① 수탁자는 신탁수익보수(이하 "수익보수"라 함)를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이 최초 신탁원본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신탁원본은 최초 신규일로부터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까지 일부해지 금액이 있는 경우 일부해지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② 수익보수 계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기간 만료일 1영업일 전일
 2.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 포함)를 신청한 날 이후 1영업일
- ③ 기준지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1.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공인된 지수를 사용할 것
 2. 신탁재산의 성과를 공평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수를 사용할 것
 3.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을 것
- ④ 제6항의 수익보수 산정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기준지표는 다음과 같다.
- 기준지표 : ()
- ⑤ 이하 본 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탁수익이란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가액을 의미한다.
 - 가. 수익보수 계산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에서 신탁원본과 기본보수, 중도해지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 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 이후 수익보수 계산일 전일까지 지급한 신탁이익
 - 2. 신탁수익률이란 신탁수익을 신탁원본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 3. 기준지표수익률이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익영업일 또는 직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종료시 기준지표 대비 수익보수 계산일의 장종료시 기준지표의 상승 또는 하락 비율을 의미한다.

⑥ 수익보수 가액은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text{수익보수} = \text{신탁원본} \times (\text{신탁수익률} - \text{기준지표수익률}) \times (\quad) \%$$

2. 신탁수익률이 기준지표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또는 연 ()%의 신탁수익률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수익보수는 0원으로 한다.

3. 신탁수익에서 수익보수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신탁수익률(이하 본 조에서 "순수익률"이라 함)이 연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순수익률이 연 ()%을 초과하도록 수익보수 가액을 계산한다.

⑦ 수탁자는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수익보수를 제1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서 정한 날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수익보수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에 이익을 계산하여 신탁원본에 가산하거나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1. 매분기말(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월이 경과한 날
3. 신탁계약 해지(일부해지를 포함한다)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4. 신탁기간 만료로 인한 신탁원본을 지급하는 날
5. 기타 ()

② 신탁이익의 계산의 대상 기간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 익일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 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19조 (조세 및 비용)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충당하거나 위탁자에게 따로 청구한다.

제20조 (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재산을 처분하기 곤란하여 신탁원본 및 이익의 상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신탁재산의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가 가능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가 가능하더라도 가격조건이 불리하게 되어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16조에서 정한 기본보수와 제17조에서 정한 수익보수 및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 수수료를 받는다.

$$\begin{aligned} & - \text{신탁계약일로부터} (\quad) \text{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quad) \% \\ & - \text{신탁계약일로부터} (\quad) \text{ 이상} (\quad) \text{ 미만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quad) \% \\ & - \text{신탁계약일로부터} (\quad) \text{ 이상 경과시 : 해지 신탁원본의} (\quad) \% \end{aligned}$$



